용역 시방서

월성본부 경주 제16호 어업피해보상 후
잔존 어업시설물(폐그물 등) 처리 용역

2026. 7.

월성원자력본부

HSE부

목 차

Ⅰ. 용역 개요 ····· 1

Ⅱ. 일반시방서 ····· 2

Ⅲ. 특기시방서 ····· 5

별첨: 1.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2. 안전계약 특수조건 1부

3. 정보보안 계약 특수조건 1부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월성본부 경주 제16호 어업피해보상 후 잔존 어업시설물 처리 용역

2. 용역 범위

가.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보상금 지급 후 경주 전촌항 인근(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792-4)에 방치된 잔존 어업시설물 폐기 처리

나. 폐기물 예상 처리량

폐기물 종류	성상	예상처리량
폐그물, 목선 등	고상	300ton

3. 용역 기간 : 착수 후 1개월

4. 용역 방법 : 처리 작업 후 처리실적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지불(실적정산)

5. 자격조건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허가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허가를 취득한 업체

○ 폐기물 중간처분업, 종합처분업 또는 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45조 제2항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02호)에 의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계약 방식은 “가”항부터 “다”항까지 모두 만족하고 “가”항에 명시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소각)가 가능하도록 어느 한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수급계약(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한정한다.

Ⅱ.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경주 제16호 어업피해보상 후 잔존 어업시설물 처리 용역 수행에 적용하며, 기타 사항 및 제반 기준은 “도급계약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나. 계약상대자: 용역계약에 의해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

3. 용역 제출서류

가. 입찰전 구비서류

○ 본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 전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발생 되는 피해는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가 진다.

- 사업자등록증
- 폐기물 중간처분업, 종합처분업 또는 재활용업 허가증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서류

나. 계약시 구비서류

- 폐기물수탁확인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서
- 출입 보안각서, 교육 증빙자료 등 출입 신청 및 보안에 관련된 서류
- 기타 계약상대자가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자로서의 제반허가 및 신고 규정 등을 준수하고 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서 인계받은 폐기물을 관련법에서 정한 수집, 운반 및 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사/형

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책임도 지며, 과태료 등의 피해 보상 및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 중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한 용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 행정처분 및 민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이의 해소를 위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5. 업무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후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각 후 소각재 매립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장 사전 지정 후 발주자에게 통보

○ 소각재 매립 후에 지정된 매립장에 매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불가항력 적인 사안으로 인해 지정된 매립장 변경 시,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 및 매립 후 그 결과 제출) 등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계약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기성고 및 준공검사 시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비는 최종 처리량을 산출, 정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실적정산)

○ 준공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요청하면 발주자가 심사 후 지급한다.

- 준공검사 요청서
- 준공정산 내역서
- 준공검사 결과 동의서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증명
- 기타 배출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7. 계약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하여 계속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나. 계약상대자의 사유(부도, 영업정지 및 휴업 등)로 반출 및 처리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자체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기타 안전장비)를 확보/지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차(현장작업)시 모두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자체 인력에 의해 발생한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특히, 화재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와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라 위해 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라. 폐기물 상차 후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안전계약 특수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개선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정보보안 특수조건 등의 규정에 따른다.

Ⅱ.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용역의 내역과 요령은 본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며 본 시방서는 다른 제반 규정보다 우선한다. 또한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 용역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자료를 요청 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산정 및 작업의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라. 폐기물 위치(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792-4, 전촌항 인근)의 처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처리 및 정돈상태를 점검 요청하고, 발주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요청할 수 있다.